#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13. 8. 30. 2012누9231]



# 【전문】

【원고, 항소인】

【피고, 피항소인】 보건복지부장관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손계룡)

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12. 2. 22. 선고 2011구합17233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3. 6. 14.

#### 【주문】

### ]

- 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- 2. 피고가 2011. 3. 3.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술 시행 중단명령을 취소한다.
- 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 주문과 같다.

#### 【이유】

#### 】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서울 강남구 (주소 생략) 소재 '〇〇〇〇안과'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(regional conjunctivectomy, 이하 '이 사건 수술'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.
- 나. 피고는 2011. 3. 3.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,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,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의료법'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<b>

# 【이유】

# 11. 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서울 강남구 (주소 생략) 소재 '〇〇〇〇안과'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(regional conjunctivectomy, 이하 '이 사건 수술'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.
- 나. 피고는 2011. 3. 3.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,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,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'의료법'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<b>

## [이유]

## 1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서울 강남구 (주소 생략) 소재 '〇〇〇〇안과'를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7년경부터 눈의 결막을 절제하여 해당 부위를 미백하는 수술인 국소적 결막절제술(regional conjunctivectomy, 이하 '이 사건 수술'이라 한다)을 개발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여 시행하고 있었다.

나. 피고는 2011. 3. 3. 원고에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, 이 사건 수술은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이고,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의료법'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의 중단을 명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